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지역 지정 특례〉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98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3.
3. 회부연월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도 불구하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위와 같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공업지역의 면적 증가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별도 배정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특례 적용이 제한됨.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경제공동화 및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업지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내의 지역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공업지역으로 배정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
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반환공여구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u><신설></u>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하여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공업지역을 별도로 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현행	개정안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라-----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사업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

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1)

현행법 제15조는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특례**를 두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지원도시사업구역²⁾ 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여야 함.³⁾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가 상이하여 공업지역 외 다른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의 공장 건설이 어려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이나 관련 허가등을 할 수 없고,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할 수 있으므로,4)

현행법상 공장의 신설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제

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반환공여구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공여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공업지역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한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경기도 의정부시는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하여 디자인 클러스터(캠프 레드클라우드)와 헬스케어 특화단지(캠프 잭슨),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캠프 카일)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이를 위한 종합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 없이는 추가적인 공업지역의 지정이 불가능하여 개발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 통과시 의정부시 소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반환공여구역 현황⁵⁾ >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지	반환 면적 (만㎡)	종합계획 상 활용 용도 (예정 포함)
인천광역시 ⁶⁾		캠프 마켓	48	공원, 도로, 공공시설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 등	200	도시개발사업(물류단지 조성 ⁷⁾), 도시개발사업(헬스케어 특화단지 조성) 등
	하남시	캠프 콜번	31	도시개발사업 (산업·업무 융복합단지 조성)

※ 자료 : 행정안전부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고 수도권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현행법은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증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업지역의 지정은 시·도별로 이루어지므로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인구

5)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있는 경우만을 고려하였음.

6) 인천광역시의 경우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며,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함.

7) 현재 의정부시는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및 산업이 밀집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공업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시·도 내에서 공업지역 조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의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반환공여구역에 대하여는 공장의 신설이나 학교의 이전·증설 등 각종 특례가 이미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이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0